

【 3 】 양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출연월일 : 2006. 1.

제 출 자 : 양 주 시 장

1. 개정이유

- 행정의 복잡다양해지고 시로 승격하여 각종 개발이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각종 법률문제 발생 및 자문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
- 현재 2명으로 되어있는 고문변호사 인원을 늘려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받고자 함

2. 주요골자

- 현재 2명으로 되어 있는 고문변호사를 5명으로 증원(안 제2조)

양주시 조례 제 호

양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양주시고문변호사및변리사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조례의 제명중 “양주시고문변호사및변리사운영조례”를 “양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중 “양주시고문변호사 등”을 “양주시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”로 한다.

제2조제1항중 “2”를 “5”로 하며, 같은조 제3항중 “1”을 “어느 하나”로 하며, 같은조 제3항제2호중 “기피”를 “거부”로 한다.

제3조 제명중 “고문”을 “자문”으로 한다.

제4조제3항 중 “부가가치세법”을 “「부가가치세법」”으로 한다.

제5조중 “사건”을 “자문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양주시고문변호사및변리사운영조례</u>	<u>양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</u>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양주시고문변호사 등</u> (이하 “고문변호사·변리사”라 한다)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<u>양주시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</u> ----- ----- -----
제2조(위촉 및 해촉) ①시장은 개업중인 변호사·변리사중에서 변호사는 <u>2인</u> 이내, 변리사는 1인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. ②생략 ③시장은 다음 각호의 <u>1</u>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고문변호사·변리사를 해촉할 수 있다. 1.생략 2.정당한 사유없이 소송수행을 <u>기피</u> 한 때	제2조(위촉 및 해촉) ①----- ----- <u>5</u> ----- ----- ②현행과 같음 ③----- <u>어느 하나</u> ----- ----- 1.현행과 같음 2.----- <u>거부</u> -----
제3조(<u>고문</u> 사항) 생략	제3조(<u>자문</u> --) 현행과 같음
제4조(소송비용 등) ①~②생략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은 <u>부가가치세법</u> 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지급한다.	제2조(위촉 및 해촉) ①~②현행과 같음 ③----- -- 「 <u>부가가치세법</u> 」 ----- -----
제5조(자문실적부의 비치)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<u>사건실적부</u> 를 비치하고 자문실적을 정리하여야 한다.	제5조(자문실적부의비치) ----- ----- ----- <u>자문</u> ----- -----

양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

제정 2003. 10. 19 조례 제32호

개정 2004. 4. 26 조례 제156호

(제명개정 포함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양주시고문변호사 등(이하 “고문변호사·변리사”라 한다)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04. 4. 26>

제2조(위촉 및 해촉) ①시장은 개업중인 변호사·변리사중에서 변호사는 2인이내, 변리사는 1인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. <개정 2004. 4. 26>

②고문변호사·변리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 <개정 2004. 4. 26>

③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고문변호사·변리사를 해촉할 수 있다. <개정 2004. 4. 26>

1. 사임의 의사가 있는 때
2. 정당한 사유없이 소송수행을 기피한 때
3. 정원의 조정 및 시정수행상 필요한 때
4. 다음의 사유로 시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때
 - 가. 불변기일의 도과
 - 나. 소송당사자와의 담합
 - 다. 무성의한 소송수행
 - 라. 법률고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는 때

제3조(고문사항) 고문변호사·변리사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. <개정 2004. 4. 26>

1. 시가 당사자로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
2.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
3. 특허, 실용실안 의장 또는 상표등록 등 지적재산권업무와 관련한 사항. <신설 2004. 4. 26>
4. 기타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

제4조(소송비용 등) ①고문변호사·변리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별도의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. <개정 2004. 4. 26>

②고문변호사·변리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20만원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04. 4. 26>

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지급한다.

제5조(자문실적부의 비치)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자문실적을 정리하여야 한다.

제6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양주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고문변호사와 수임료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.

부 칙(2004. 4. 26 조례 제156호)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양주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고문변호사와 수임료의 지급등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.